

영등포구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장순원 의원 발의】



2019. 6. 1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20호로 2019년 6월 5일 장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도중 일탈이 언론 보도되어 지방
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이에 행정
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
련하여 권고한 바,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함 (제명 등)

-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제5호)

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 (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의원 배제)

라.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 (안 제6조 및 별표)

마.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 (안 제9조)

바.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규정 신설 (안 제11조)

사.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30일 전으로 조정하고 공개하도록 규정 (안 제12조)

아.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상임위) 보고 의무 (안 제13조)

자.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명시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19. 6.4. ~ 6. 10.) 결과: 의견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의회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명의 출장,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 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출장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 제도 체험과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지방의회 의원외교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효율성·효과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